

2006. 5. 30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센터

기업윤리 브리프스 *Business Ethics Briefs*

< 자 례 >

01 OECD의 2006년 뇌물 및 정부 지원 수출신용에 관한 행동 지침

개 요

지침의 내용

05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도전

개 요

모범관행이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최선인가?

투명성 제고

상처입은 규제

투자자들의 힘

변화의 수용

15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개선 내용

제1차 회계개혁

제2차 회계개혁

20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우리은행

신세계

28 국내 윤리경영 동향

☞ 이 자료는 국가청렴위원회 디지털기업윤리센터(<http://ethics.kica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I. OECD의 2006년 뇌물 및 정부 지원 수출신용에 관한 행동 지침*

** 2006 Action Statement on bribery and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개 요)

□ 2006년 5월 OECD 회원국들은 뇌물로 성사된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함

* 전세계적으로 정부 지원 수출신용기관들이 제공하는 수출금융 지원규모는 대출 또는 대출보증 등 연간 600억 US달러 수준

o 신규 합의문은 2000년도의 뇌물공여 방지 행동 지침(Action Statement)의 실천 경험을 토대로 회원국들의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 수출신용 부문에서 뇌물공여 방지를 위한 행동 지침임

o 수출업자가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 방지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실사(due diligence)를 강화해야 하고, 수출신용의 신청 서류, 지원 거부 등을 할 수 있음

□ OECD의 수출신용그룹(Export Credit Group : ECG)의 의장인 Nicole Bollen은 ‘이 합의문은 OECD의 뇌물방지협약을 보완하고 수출신용기관들이 국제 상거래 부문에서 뇌물공여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함

(지침의 내용)

□ 국제 상거래상의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뇌물방지협약)과 1997년 개정된 OECD 이사회의 국제 상거래상의 뇌물공여방지에 관한 권고문(이하 1997년 권고문)에 따라, OECD의 수출신용 및 신용 보증에 관한 작업반(Working Party)의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함

1. 국제 상거래상의 뇌물공여방지는 선결 과제이고, 정부의 수출신용 지원으로 이득을 얻는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ECG는 뇌물 방지협약과 1997년 권고문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체임
2. 정부의 수출신용 지원으로 이득을 얻는 국제 상거래상의 뇌물공여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되, 각 회원국의 법체계와 수출신용의 특성에 부합해야 하고 불법지불에 대한 책임이 없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 a. 뇌물공여를 금지하고 뇌물을 방지하는 경영통제시스템을 개발, 적용, 기록하도록 하는 자국의 법령 등 자국의 법적 체계 하에서 국제 상거래상 뇌물공여시의 법적 결과를 지원 요청 수출업자와 적격 신청자에게 제공
 - b. 수출업자와 적격 신청자로 하여금 본인과 대리인 모두 거래상의 뇌물공여에 관련 되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관련 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서약하도록 요구
 - c. 수출업자 및 적격 신청자가 다음의 국제금융기관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지원금지 대상자 명단(debarment list)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

* World Bank Group, Afric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Bank,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d. 수출업자와 적격 신청자에게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최근에 자국의 법정에서 고발된 적이 있는지 또는 신청 전 5년 이내에 자국의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국내의 행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구

- e. 수출업자와 적격 신청자는 ① 거래와 관련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자의 신원 ② 대리행위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불하기로 합의된 수수료(commision) 및 비용(fee)의 액수 및 목적을 공개하도록 요구
- f. 다음의 경우에는 실사(due diligence)를 강화
- ① 수출업자와 적격 신청자가 2의 c에서 규정한 국제금융기관의 지원 금지 대상자 명단에 들어 있는 경우
 - ② 회원국이 수출업자와 적격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최근에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법을 위반하여 자국의 법정에서 고발된 사실 또는 신청 이전의 5년 이내에 자국의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국내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③ 회원국이 거래상 뇌물이 개입될 수 있다고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 g. 외국 공무원 뇌물방지법에 대한 위반으로 자국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동등한 행정조치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내부의 시정 및 예방 조치가 취해지고, 유지되고,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검증
- h. 뇌물공여 사례를 공시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뇌물공여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 사례들을 법집행 당국에 공시하는 절차를 개발 및 이행
- j. 회원국은 신용, 담보 또는 다른 지원사항이 승인되기 전에 수출계약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뇌물이 개입되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실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청 승인을 보류하고, 실사를 강화한 결과 거래상 뇌물이 개입된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에는 신용, 담보 또는 다른 지원을 거절
- k. 신용, 담보 또는 다른 지원이 승인된 후에 뇌물공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 거절, 제공된 금액의 배상 또는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

3. 회원국들이 2에서 규정된 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 지원으로 이득을 얻는 거래상의 수출업자와 적격 신청자에 대한 다음의 책임들을 완화해서는 안됨
 - ① 국제 상거래에서의 외국 공직자들에 대한 뇌물공여 방지를 위해 규정되어 있는 자국 법령을 포함한 모든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제들을 준수
 - ② 모든 관련 지불을 포함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제시
4. 뇌물방지협약과 1997년의 권고문이 자국내의 정부의 수출신용시스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
5. 정부 지원 수출신용과 관련하여 뇌물방지를 위한 더 나은 조치들을 강구하기 위해 교환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대조하여 체계화
6. 적절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

II.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도전

* 맥킨지 분기보고서(*The McKinsey Quarterly*) 2004년 제2호에 수록된 '*Asia's governance challenge*'를 번역·정리한 것임

(개 요)

- 1990년대 후반 아시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는 당시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들로 하여금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게 하였음
-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지역의 거의 모든 상장기업들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Exhibit 1 참조)
-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아시아 지역 대부분 국가들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명문 법령을 채택하고 있음
- 증권거래 및 주식상장 요건, 감독당국의 권한 등을 강화

EXHIBIT 1

Asia steps up

Independent director and audit committee requirements

	1997		2003	
	Independent directors?	Audit committees?	Independent directors?	Audit committees?
China			✓	✓
Hong Kong	✓		✓	✓
India			✓	✓
Indonesia			✓	✓
Malaysia	✓	✓	✓	✓
Philippines			✓	✓
Singapore	✓	✓	✓	✓
South Korea			✓	✓
Taiwan			✓	✓
Thailand			✓	✓

Source: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정도는 국가별로 상이

-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장애가 존재하고 인센티브도 부족한 상황
- 더욱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더 나은 기업지배구조에 필요한 법적제도, 자본시장, 장기 기관투자가 등이 장기간 미발달된 상태를 지속
- 또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의 구속력이 떨어지고 숙련된 회계사 및 기타 전문가들도 부족한 상황

□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출발점은 유럽이나 북미 지역의 그것과 매우 다름

- 아시아 지역의 정부, 기업경영자, 투자자 및 감독당국들은 기업지배구조 관행이 단시일내에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이사회들의 문화적 대변동일 뿐만 아니라 더 높은 투명성의 이행을 강요하는 다소 위압적인 조치임

(모범관행이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최선인가?)

□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은 변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그러나 국가별로 소유구조, 사업관행, 당국의 규제능력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북미 또는 서유럽의 기업지배구조 요건을 단순히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차관제공자, 국제기구 등이 아시아지역 국가들에게 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 요건을 따르도록 재촉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임

-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기업 고위 간부가 재무보고의 부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미국 Sarbanes-Oxley법상의 회계보고 인증요건을 모방하려고만 하고 있음
 - 아울러 Sarbanes-Oxley 기준은 CEO나 CFO가 “의도적”으로 재무보고 기준을 위반했거나 재무제표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을 강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음
 - 그러한 주관적인 판단기준으로는 법령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으면 강제적인 이행기준을 수립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
- 또한 완전히 독립적인 사외이사회 설치요건도 비현실적이어서 이사회 구성원중 일부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은 필요하나 대다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함
 - 또한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자질을 갖춘 사외이사의 수가 많지 않은 실정
 - 비경쟁 또는 비밀조항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사외이사 운용을 강제하기 어려운데, 이는 너무 깊은 내부정보가 사외이사에게 제공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업전략이나 성과에 사외이사가 너무 깊숙이 개입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임
 - 또한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상장기업들도 완전히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단일 지배주주 형태가 많은 아시아 기업들에게 그러한 요건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아시아 각국 정부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개혁의 순서를 정해야 하며 각국의 필요에 따라 그것들을 수정 적용해야 함
 - 각국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이 OECD가 제정한 기업지배구조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과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기본적인 개선사항을 시급히 이행토록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많은 요건들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임

(투명성 제고)

- 더 높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새로운 법률 및 지배구조 강령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

- 최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회계 기준 개선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며 국내 및 국제 회계기준에 정통한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으며 회계기준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도 방만한 상태

- 이에 따라 이익, 현금흐름, 대차대조표 등 보고내용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짐

- 그러나 이들 국가의 재무보고 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어지면서 공시요건, 감사관행 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대만 등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수치 자체가 여전히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현재 분기별 재무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분기별 재무보고가 경영진으로 하여금 너무 단기적인 성과만을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시아지역의 경우 현재 공개되고 있는 정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함에 따른 혜택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비용을 초과할 것이라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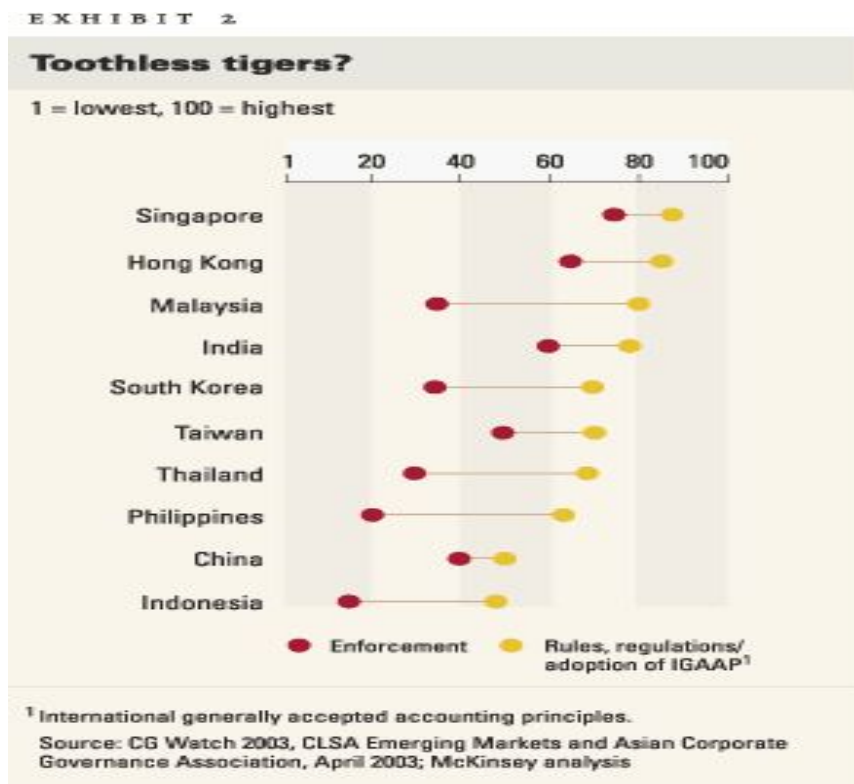
- 아시아 지역의 재무제표 공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방안이 제기됨

- 한국의 경우 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소유지분 구성이 아닌 재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결합재무제표 외에도 대규모 재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포괄한 이른바 “결합된(Combined)” 재무제표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 외부감사의 독립성 또한 강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 증권규제위원회(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는 매 5년마다 상급 외부감사인들을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홍콩, 인도, 태국 등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모색하고 있음
- 더욱이 싱가포르의 경우 공기업 외부감사인들은 더 이상 기존 감사대상 기관들에게 기장대행 및 내부감사 등과 같은 비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상처입은 규제)

- 비록 아시아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이 회계기준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기업지배구조 규정들을 도입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아직 약한 상태임 (Exhibit 2 참조)



- 이는 주로 정경유착, 이해충돌관리 메커니즘 미발달 등에 기인하고 있음

- 아울러 단기적인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욕구는 대규모 기업들로 하여금 소액주주 보호에 소홀하게 함

□ 일부 규제당국은 강력한 조사권한 및 정치적 의지가 결여

- 대만 증권선물위원회(Taiwan's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의 경우 기업의 불법행위 조사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검찰 및 감사원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들 기관들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임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대규모 영향력 있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고발당하기도 함
- 또한 규제당국은 활발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데다, 법률시스템도 발달하지 못하여 기업의 불법행위를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 그러나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기업을 감시하기 위해 인력 및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규제당국의 권한도 강화

- 2002년 중 한국 증권선물위원회는 세계적인 회계법인의 한국지사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수를 줄임으로써 그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 회사를 처벌하는 사상 유례없는 조치를 취했음
- 홍콩은 규제당국과 경찰이 금융범죄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 증권규제위원회는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부조리 근절 등을 위하여 중국내 5위 증권중개업체인 남부증권거래소를 영업정지시킴
- 한국, 중국, 대만, 태국 등 몇몇 국가들은 투자자들의 권한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서 집단소송제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그러나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어야 함

- 소송을 어렵게 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소송가액에 비례하여 선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착수금), 소송 미결처리분 누적,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원칙(loser pay rule), 非형사소송의 경우 피고인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기업소송 전문 판사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투자자들의 힘)

- 원칙적으로 투자자 및 신용공여자들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지배구조 요건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Exhibit 3)
- 그러나 실제로는 아시아지역 대부분 국가들의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개입되기 싫어함
- 그들은 특정기업의 성장 전망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여타 변수에 비해 크다고 생각되면 그 기업에 투자하고 지배구조 문제 등이 제기될 경우에는 경영층에 도전하기보다는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경향을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The Bank of Korea) 관계자는 국내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장기 성장전망에 따라 투자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주가변동에 따라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

EXHIBIT 3

The governance premium

Average premium investors are willing to pay for well-governed company,¹ 2002, %



¹ Of those investors willing to pay premium.

Source: 2002 McKinsey investor opinion survey

- 투자자들은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경영참가에도 나서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재무보고 제도의 개선 및 공시범위 확대 등이 도움이 될 것임
 - 아울러 소액주주를 위한 개혁에 있어 대리인 투표, 사외이사의 지명 및 선출권, 연차 주주총회를 통한 문제 제기 등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중국의 경우 신주발행 등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한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투표 허용을 고려하고 있음
- 한편, 일부 투자자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태국의 국내펀드, 자산관리회사, 생명보험회사들은 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투자가연합을 형성하여 230억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관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
 - 싱가포르 증권투자협회(The Securities Investors Association)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한편, 그들이 투자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펀드 매니저와 협력
- 신용공여기관 역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국민은행은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소기업들에게 더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더욱이 지역내 언론들은 잘못된 경영관행을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
 - 중국의 『Caijing』이라는 금융전문지는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기업부정행위를 보도함으로써 폭넓은 명성을 얻었으며,
- 말레이시아의 경제주간지 『The Edge』는 정기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다루면서 국내기업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독자들에게 경고

(변화의 수용)

- 기업지배구조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개혁에서든 인식도 제고가 필수적인 요소임
 - 홍콩, 싱가포르, 한국, 태국 등의 사외이사들이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명예직으로 인식함에 따라 사외이사 기구들은 세미나 및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들을 교육
-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 및 개혁의 촉진을 위해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와 같은 지역차원의 조직들도 구성됨
 - 아울러 크레디 리요네 증권 아시아(CLSA)와 같은 기관들은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 관행에 대해 등급을 매겨 발표
- 한편, 일부 아시아 기업들은 자발적인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인도의 인포시스 테크놀로지社는 10가지 기업지배구조 강령 준수정도를 발표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를 미국 및 영국의 회계기준을 포괄하는 8가지 회계기준과 부합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사외이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완전히 독립적인 감사, 보상위원회 등을 갖추고 있음
 - 홍콩의 CLP(China Light & Power), 한국의 포항제철, 말레이시아의 Public Bank, 태국의 시암시멘트,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텔레콤 등은 훌륭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 사외이사가 포함된 합리적인 규모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기본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들이 일반화되었다 할지라도 이사회의 실질적인 기능은 국제기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개혁 정신이 아닌 정해진 지침을 단순히 따르는 이사회는 형식적으로는 좋아 보임
 - 이사회는 소액주주의 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한편, 적극적인 경영감시, 투자자들과의 쌍방 대화 등과 같은 의무를 완전히 수용해야 함
 - 이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경영전략 수립시 적극적인 조언을 하는 한편 위험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후임 CEO 선정 참여, 기업의 재무 및 영업 목표 설정 등으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해야 함

- 새로운 형태의 행동이 체화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사회 제도 개선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경험있는 외국인 이사를 고용하기도 함
-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일부 국가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
 - 다음 단계는 새로운 행동을 체화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 아시아의 많은 기업리더, 투자자 및 규제당국은 더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가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그들은 개혁이 하룻밤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장애물과 개혁의지를 꺾는 사건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도 잘 이해하고 있음
- 향후 아시아 지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 및 기업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기업들은 더욱 강하고 목표가 분명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함은 물론, 재무보고의 범위, 정확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리 및 이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야 함
 - 국가별로 구체적인 조항은 다를지라도 기업 및 유가증권 관련 견고한 법령, 엄격한 회계기준, 감독당국의 권한 강화, 효율적인 법률체계,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한 노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산발적인 개선은 한계를 보일 것임

III.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개선 내용

1. 제1차 회계개혁(1998년 ~ 2001년)

- 기업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국제화하고,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를 설립하여 회계기준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
- 국제화된 회계기준을 잘 준수하도록 감시하는 외부감사제도와 감리제도를 강화

□ 회계기준의 개혁

- 외화환산손익을 이연자산(부채)에서 당기손익으로 처리
 - 모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함으로써 자산·부채 개념에 맞지 않는 이연자산·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삭제
- 재산재평가 인정조항의 삭제
 -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취득원가의 예외로 인정하던 재산재평가법상의 재산재평가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함
- 채권·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제도의 확대도입
 -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채권·채무의 계약조건을 재조정하는 경우 최종상환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평가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함
-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 의무화
 - 중대한 영향력(통상 지분율 20%)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피투자회사의 영업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분법* 평가제도를 의무화
 -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평가

—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제도의 정비

- 파생상품거래를 시가(공정가액)로 평가하여 자산·부채로 계상하고,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을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하도록 함

— 자산평가기준의 적정화 도모

- 자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자산의 가치하락부분을 감액손실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 손익인식기준의 보완·개선

-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회계변경으로 인한 과거 회계처리 사항에 대한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고 동 누적효과가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함

— 재무제표상 자산·부채의 적정 표시

- 매출채권의 양도를 거래 조건 등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부채가 적정히 표시 되도록 함

— 재무제표의 주석 공시의 강화

- 사업부문별 중단된 사업부문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회계기준을 신설

□ 금융업 회계처리준칙의 제정

— 은행·증권·보험업 공통사항

- 유가증권에 대한 전면적인 시가 평가제도 도입
- 법정관리, 화의 등을 통하여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권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채무면제손실을 인식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대출채권 등의 상환기간 연장 등 조건 변경 시에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손실을 계상하도록 함

-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설정제도를 도입하여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에 대하여도 손실예상액을 추정하여 미리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예상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이 적정하게 대응되도록 함

— 은행업회계처리준칙

- 자산·부채의 만기일별 분석자료와 타은행 및 금융시장과의 거래관계, 환포지선에 관한 자료, 신탁계정에 대한 손실보전액 등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공시내용을 강화

— 증권업회계처리준칙

- 부채로 계상하던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에 계상하도록 하여 종전의 증권거래준비금환입이익 계상에 따른 기간손익의 왜곡을 방지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 책임준비금 적립을 순보험료식으로 통일하고 신계약비의 상각기간(7년)을 통일하여 이연처리하도록 함으로서 비교가능성을 확보
- 생보사의 사업비 중 이연처리 하던 것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이 적절히 계상되도록 함

□ **결합재무제표제도의 도입·시행 ('99년 외부감사법)**

-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전체를 포함하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 영업성과, 현금흐름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계열회사간 거래의 상계제거, 내부거래의 주석공시 등을 규정

□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신설**

- '99년 6월 한국회계연구원* 신설

* 2006.3월 한국회계기준원으로 명칭 변경

□ 외부감사기능의 강화

- 상장·등록법인 등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함
- 공인회계사는 자신 및 배우자가 지분을 0.01% 또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소유한 기업은 감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
- 감사보수로 주식, Stock Option, 전환사채를 받지 못하도록 함

□ 국제감사기준의 전면도입

- 회계감사기준은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가 제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회계 감사준칙은 동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제감사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개정하고 '99년부터 적용

2. 제2차 회계개혁(2002년 ~ 2003년)

- 기업의 회계정보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여 투명한 회계 관행이 기업현장에 정착하는데 초점

□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 강화('03.12월 증권거래법)

- 감사위원회 전문성 제고(위원 1인을 재무·회계전문가 의무화)
- 공시서류의 CEO, CFO의 인증 의무화
-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의 원칙적 금지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개선('03.12월 외부감사법)
- 공시서류 허위 기재시 사실상 업무지시자에 대해 민사책임 부과

□ 회계정보의 정확성 · 적시성 제고('03.12월 증권거래법)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05.3월 증권거래법 시행령)
-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제도 도입('04.4월 자산 1조원 이상 → '05.3월 자산 0.5조원이상으로 확대)
- 감사인에 대한 감사증명제도 보완
- 공개기업 회계정보 공시 강화
- 스톡옵션의 회계처리방법(스톡옵션 관련비용에 대해 공정가치법에 의한 평가 의무화) 등 개선
- 증선위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확대('04.4월 외부감사법 시행령)

□ 외부감사인의 감사책임 강화('03.12월 외부감사법)

- 정기감사 회계법인의 주기(6년)적 교체 의무화
- 회계감사법인의 컨설팅업무 제한('03.12월 공인회계사법)
- 감사조서의 진실성 확보 · 훼손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 최진영 부국장이 『기업지배구조』 vol.13(2004, 겨울)에 기고한 자료를 수정 · 보완한 것임】

IV.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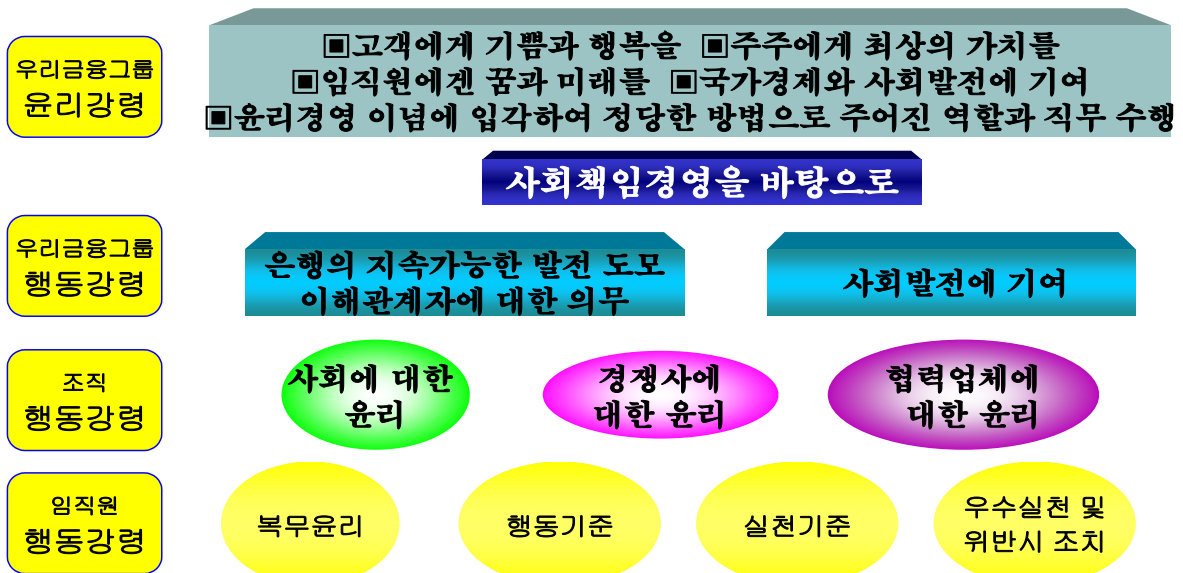
1. 우리은행의 윤리경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2006. 5. 20일 우리은행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송부한 자료를 요약한 것임

《 우리은행의 新가치체계 》



《 윤리경영 체계 》



《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 》

◎ 적격성심사(Fit & Proper) 시스템

-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 및 윤리·준법성 심사를 통해 금융인으로서 자질 향상 및 윤리·준법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03.7 도입)
- 행동강령에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규정하고, 가점자 우대제도와 감점자 제한제도를 운영
- 윤리강령 우수 실천 또는 위반사례 제보 및 상담을 위해 '클린센터' 설치 운영

◎ 우리실천기준(Woori Guideline)

- 바람직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기준 제시
- 금품 또는 향응·접대 등 제한, 경조사 게시범위, 경조금품, 축하화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개인편의 수혜금지

-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상품 등을 판매 또는 대행할 경우 상대회사로부터 우리은행 직원에게 주어지는 편의의 수혜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 직원 개인이 상대회사로부터 식사, 선물, 접대, 여행, 기타 서비스 및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혜받는 행위 일체를 금지
- 제휴상품 판매에 따른 영업독려 및 판매동기부여의 개인별 인센티브는 은행이 주체가 되어 성과평가하여 보상

◎ Clean 계약제 시행

- 협력업체와 은행간 계약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04년 6월부터 시행
- 협력업체에게 Clean 계약제 안내문을 보내고, 협력업체와 계약/구매담당 직원으로부터 Clean 계약제 이행확약서/서약서를 징구

◎ 구매업무의 투명성이 우려되는 업체와 거래제한

- 구매투명성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한 거래제한으로 공정한 구매질서 확립
 - 우리금융그룹사 출신자가 운영하거나 임원(고문, 컨설턴트 포함)으로 근무하고 있는 업체 또는 구매·납품 관련 직원으로 있는 업체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래 금지

◎ 기업윤리경영지수 신용평가에 반영

-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 환경경영, 사회책임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 '04년 9월부터 외감기업, 비외감기업, 중기업 일부에 대해 신용평가시 judgement 부문에 윤리경영지수 10% 반영
 - CEO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 및 관심수준 정도, 최근 1년간 CEO의 부정행위 연루 및 관계당국 고발조치 여부, 사내 윤리규범이나 지침·윤리헌장 등의 제정여부, 윤리준법 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평가

《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

◎ 애니메이션 '한우리양의 윤리일기' 제작 방영

- 우리윤리강령 행동규범, 행동기준등을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직원의 관심과 흥미 유발

◎ 사이버 연수시스템 'e-Ethics School' 개설

- 윤리강령 실천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용 cyber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준법감시 및 사고예방, 자금세탁방지제도 등을 교육

《 사회공헌활동 》

◎ 사회봉사활동 기금조성 및 운영

- Matching Grant* 방식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봉사활동지원, 재향교육지원, 환경개선지원, 재해복구지원 등의 활동에 기금 집행('05년 약 103억원 집행)

* 직원 출연 금액과 동일금액을 은행 차원에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 사회공헌활동 내용

- 공익상품 출연, 사회복지기관 자매결연, 무료 개안 수술, 푸드뱅크 지원, 문화행사협찬, 1사 1산 가꾸기, 우리은행 백두대간 기금 조성 등 사회복지, 문화예술, 환경 분야를 망라하여 사회공헌 활동 수행
- 우리기독교교회, 무원회, 서두리회, 인라인리스트 동호회 등 자체적으로 구성된 단체와 각 지점별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한 봉사활동 실천('05년 자원봉사 참여 : 167개점 및 단체 4,686명 참가)

《 윤리경영활동 결과 및 향후 계획 》

◎ 금융·서비스 부문 최우수 윤리경영기업 선정('06.3월)

- 산업자원부·산업정책연구원 조사

◎ 2006년 존경받는기업 대상('06.2월)

- 전경련·서울경제신문사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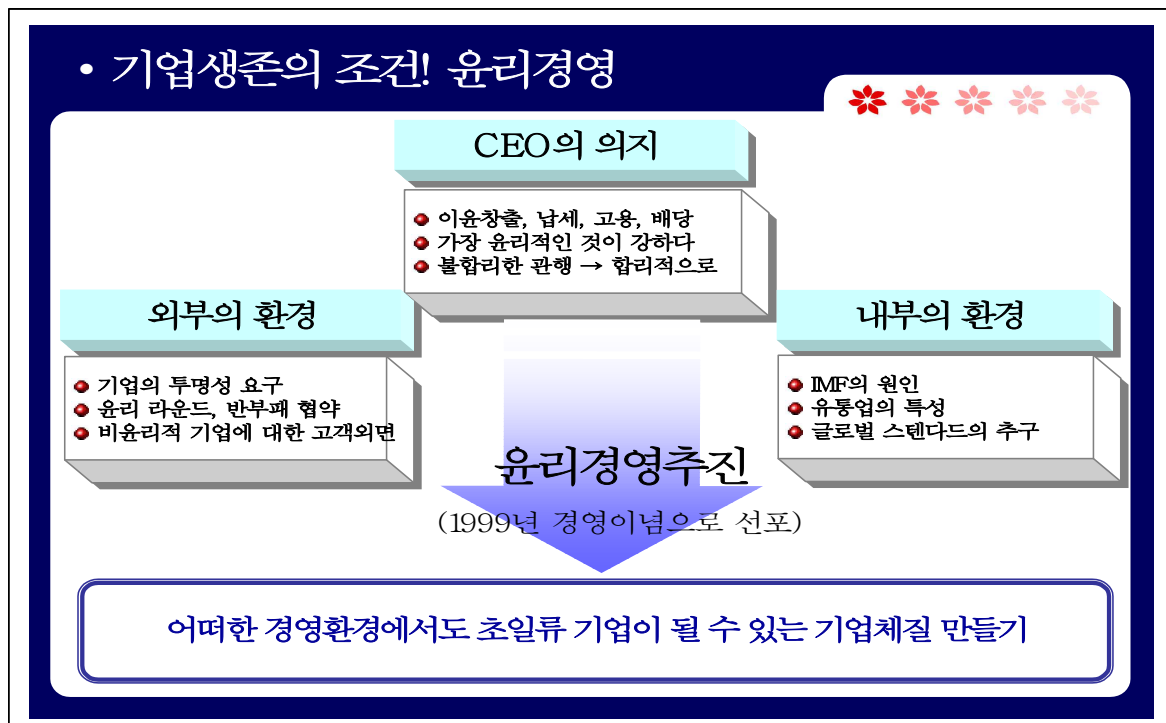
◎ 사회책임경영 선도은행

- UN Global Compact 가입('06.3월)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준비
- 'Clean Up 2006!' 캠페인 추진
 - o 슬로건 : 'Clean Up, 우리나라 1등 은행'
 - o 연중 지속적인 Clean(불합리한 관행개선, 음주문화 개선, 친환경경영) 활동을 통한 우리은행의 위상을 Up(영업실적 증대, 직장윤리 강화, 사회공헌 확대)

2. 신세계의 윤리경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2006. 5. 20일 신세계가 국가청렴위원회에 송부한 자료를 요약한 것임

《 윤리경영 가치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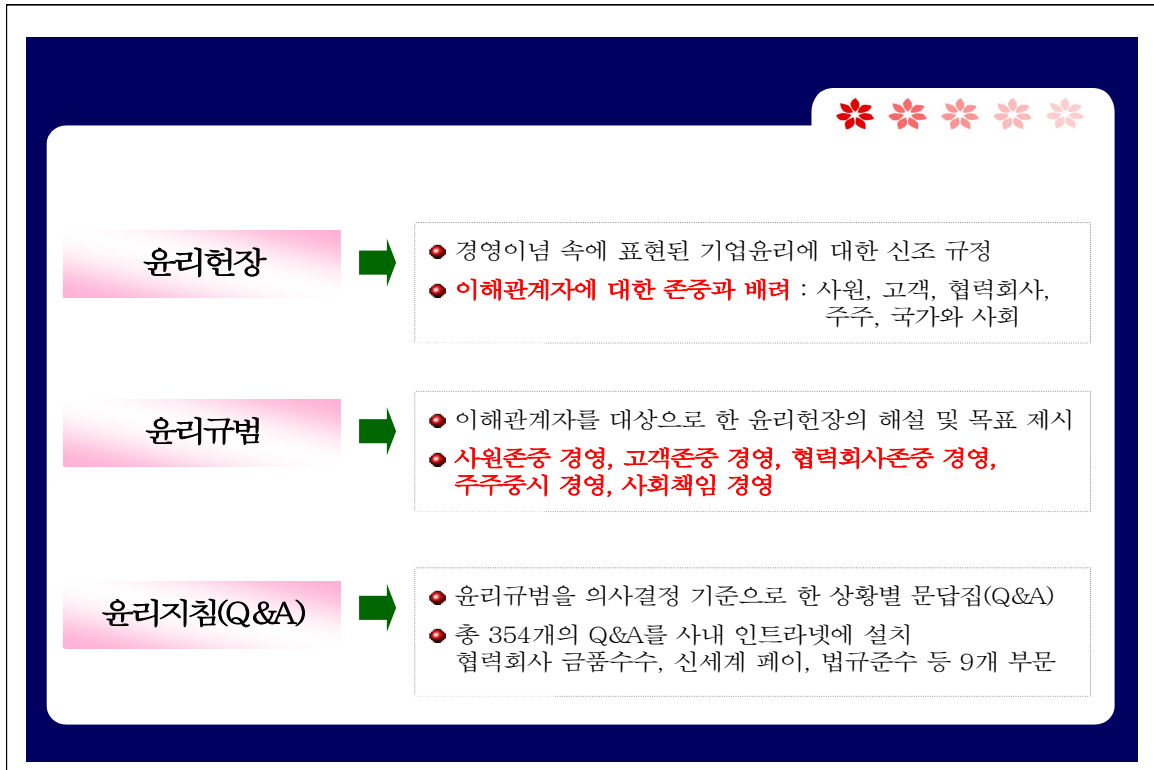
• 윤리경영의 가치체계

1999년 12월 新 CI와 함께 신 경영이념 제정 선포

경 영 이 념

신세계는 기업윤리에 바탕을 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고객, 종업원, 협력회사 및 주주가
성과와 가치를 다함께 나누고,
풍요롭고 합리적인 생활문화를 선도
하는 세계 초일류 유통기업이 된다.

● 경영이념 변화 (고객제일 → 윤리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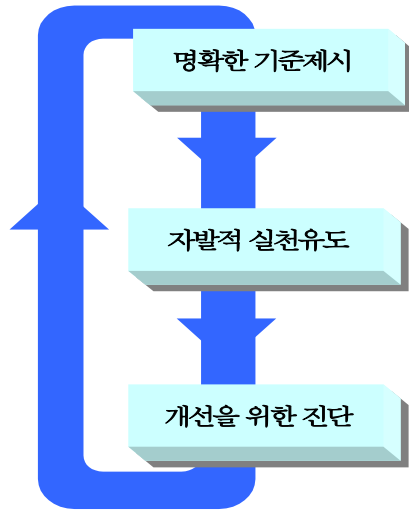


• 윤리규범

구 분	목표가치 및 비전	주요 실천 내용
사원존중경영	- 상호 발전을 위한 책임완수 - 합리적인 기업문화 조성	- 인재발굴/ 양성, 차별금지, 쾌적한 근무환경 - 공정한 평가, 합리적 보상, 경영현황 공유 - 윤리적 가치관 유지, 협력적 문화
고객존중경영	- 고객존중 정신의 실천 - 풍요로운 생활문화 창조	- 고객의 소리 경청, 참된 가치 제공 - 안전과 품질, 약속의 준수, 정보보호, 알권리 - 합리적 가격정책, 고객의 행복추구
협력회사존중경영	-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 - 합리적 상호발전 추구	- 상호존중, 협력회사 발굴 및 육성, 예절준수 - 평등한 기회, 공정한 절차, 합리적 계약, - 부당행위 금지, 윤리경영 공동실천
주주중시경영	-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 - 부단한 가치창출과 성과공유	- 주주의 권리존중, 효율경영 추구 - 이사회 독립성, 회계 투명성, 적극적 공시 - 기업가치 향상, 장기적 이익보장
사회책임경영	- 자유시장 질서존중과 사회공헌 - 지속가능한 성장추구	- 국가, 사회 질서 존중, 기본 책무 수행 - 건전한 기업활동, 정치활동 금지, 공정 경쟁 - 환경보호, 사회봉사, 미래사회 번영기여

《 윤리경영 실천사례 》

• 공감경영 윤리적 기업 문화를 위한 의식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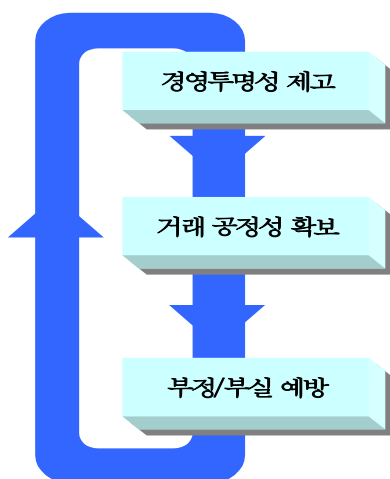


-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윤리규범 제정
(매년 개정 및 정독) → 윤리헌장, 윤리규범, 윤리지침
- 윤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윤리경영 Q&A(354사례)
- 윤리적 행동제안형 교육체계(계층별워크숍, 사이버교육)

- 국내최초 사장직속 전담부서 설치(기업윤리실천사무국)
- 사회봉사를 통한 인성함양 (연인원 60,030명 / 134억원)
- 친밀도 향상을 위한 캐릭터 개발 (바르미)
-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전자결재 시스템

- 이해관계자 윤리경영 평가 운영
→ 2005년 직원 실천도 : 61.9 / 협력회사 만족도: 70.7
고객 만족도 : 48.6 / 주주 만족도 : 55.4
- 윤리경영 개인목표 수립제 도입
- 엄격한 신상필벌 (윤리대상/징계 및 승격제한)

• 투명경영 투명한 거래 문화를 위한 경영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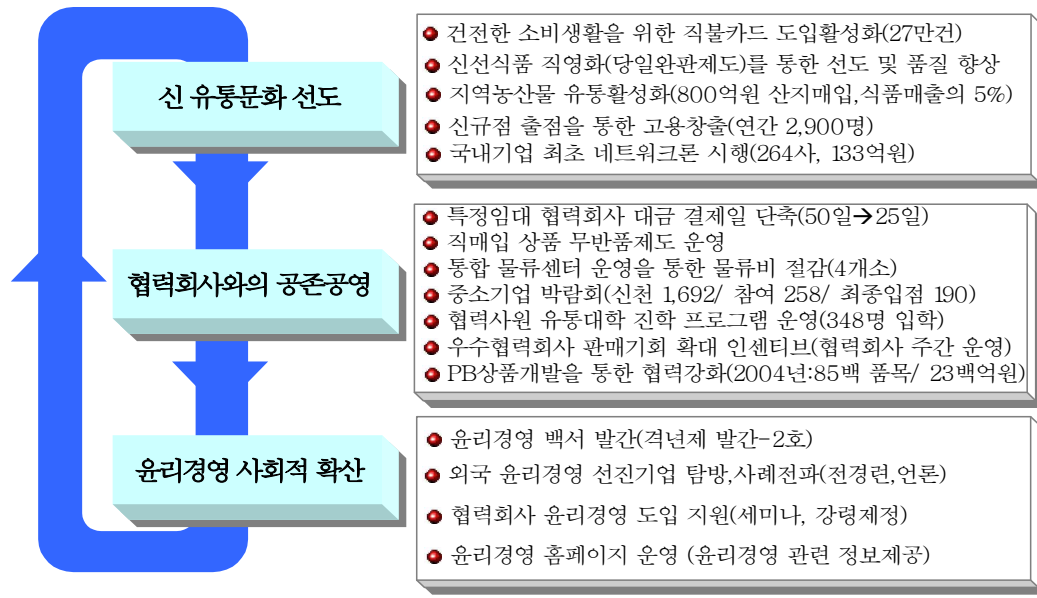


- 경영실적 매월 내부 공개(Open Book 경영) 및 공시
- 재무구조 개선 노력(부채비율 197%→145%)
- 실질적 사외이사제/ 엄격한 회계기준(재고자산 당기평가)
- 현장 자율준법 관리 시스템(상품과학 연구소, 준법담당자)

- 신규 협력회사 상담사이트 운영
-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 (2002년~)
-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협조공문 발송(4500社)
- 올바른 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의무화(표준공통계약서)
- 신세계 페이 실시를 통해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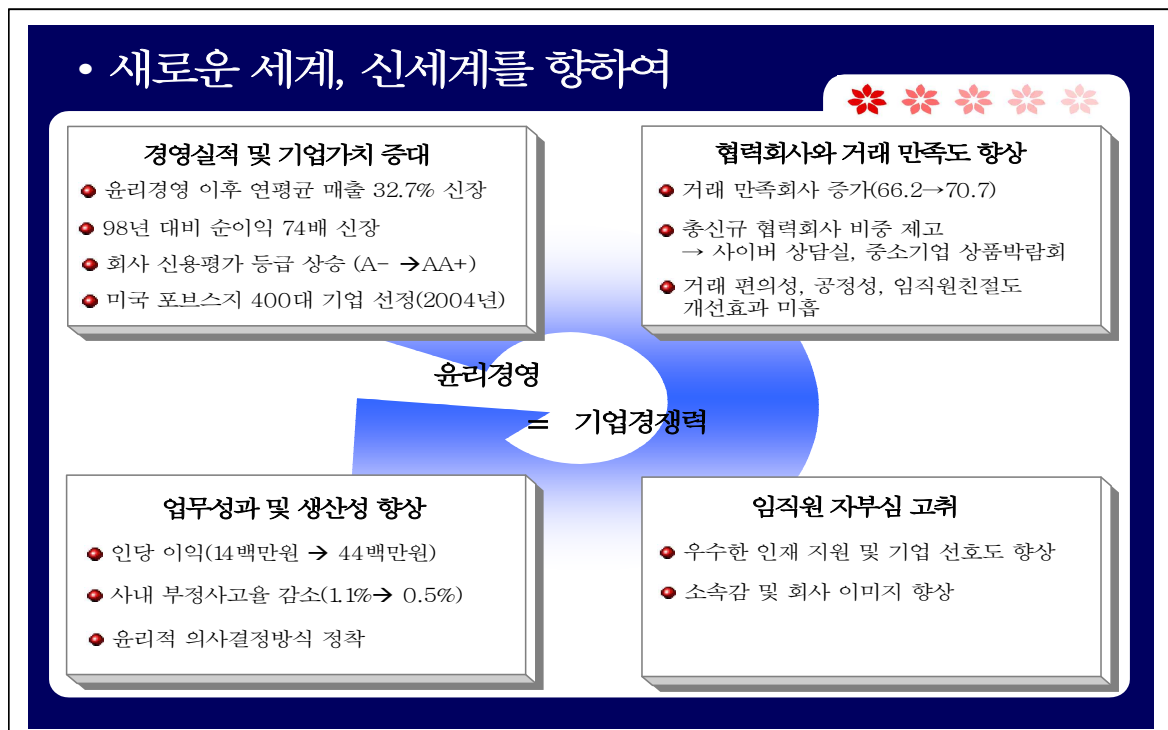
- Hot Line을 통한 제보 및 개선사항 청취(2005년 192건)
- “클린뱅크” 운영 (2004년 2,100건, 8,700만원)
- 금품향응 편의수수 자율신고제 운영 (2005년 283건)
- 금품 향응제공 협력사 거래중단(2005년 19개사)

• 책임경영 이해관계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



《 윤리경영 성과와 과제 》

•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향하여



V. 국내 윤리경영 동향

◎ 한화유통,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CP) 운용('06.5.4)

- 임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하기 쉽도록 공정거래법을 백화점 실정에 맞게 다시 구성하여 사례 중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업무편람'을 만들어 전국 사업장에 배포
- 백화점에서 자주 생기는 업무 가운데 공정거래법 저촉이 우려되는 부분을 사전에 체크하는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협력업체들이 백화점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도 도입·시행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상생경영' 전분야로 확대('06.5.8)

-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참여하는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협력 실천 및 투명한 유지관리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Win-Win 전진대회'를 개최('06.5.8~12)
- 설계, 시공, 출자·관계회사, 휴게시설 분야의 상생협력에 이어 유지관리 분야 상생협력 결의를 통해 고속도로 전분야로 상생경영 확대

◎ 대한주택보증, 투명경영·나눔경영 확대('06.5.9)

- 인사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사 1~2년차인 새내기 직원들이 신입사원 면접 평가위원으로 참여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 위해 '아우르미 봉사단'을 창단하여 기금 등을 회사와 공동으로 마련, 저소득층 후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

◎ 동부정보기술, 윤리경영 선포('06.5.9)

- 윤리경영 실천 선서 및 실천 서약서 서명식 개최
- 윤리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는 한편 정기·비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윤리경영 전담 인력도 확보할 계획

- 또한 전 직원 대상 윤리경영 교육, 윤리경영 웹페이지 운영, 지속적인 사회공헌 등도 실시하기로 함

◎ 한국산업단지공단, 혁신위한 윤리경영 실천 다짐('06.5.12)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조기구축 및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
- 클러스터 성과 및 발전방안, 기업 성공(우수)사례 발표, 윤리경영의 확산 및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윤리경영 확대·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윤리경영 선서 및 다짐대회도 가짐

◎ 조광페인트, 일본 에코마크 획득('06.5.14)

- 친환경 건축용 페인트가 1년여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근 일본 환경협회로부터 에코마크*를 인증받음

* 1989년 일본 환경성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친환경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로 제품은 물론 환경 관련 경영과 환경 관련 법규준수 등 까다로운 심사요건으로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5500여 개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

◎ 우리은행, 내부고발 시스템 아웃소싱('06.5.15)

- 기업윤리경영 전문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와 내부 고발 시스템 계약을 맺고 5월초부터 운영 시작
 - 이에 따라 직원들은 기존의 검사실과 준법감시실 등을 통한 사내 제보 이외에 KBEI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사내 부당행위와 비리 등을 제보 가능

◎ 동부증권, 윤리경영 강화('06.5.17)

- On-Off Line 윤리경영 특강, 윤리경영 커뮤니티 구축, 부점별 윤리경영 자율활동 등을 통해 윤리경영 공감대를 구축할 계획이며, 윤리경영 활동 실적을 전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

◎ SK증권, 축하난(蘭) 경매로 불우이웃 돕기('06.5.19)

-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가 아닌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하화분을 사내에서 경매해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 SK증권은 2004년 9월 제정된 윤리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로부터 난·화분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아닌 친인척 등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하화분은 허용

◎ 대전롯데백화점,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제'를 도입하고 '사회봉사활동 학점 이수제'를 신설('06.5.24)

— 금년 4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해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유통업계 최초로 자원봉사자를 양성, 관리하고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과 직원가족 및 고객이 봉사 활동을 하면 인증서를 발급하고 봉사실적을 전국 어디서나 활용가능하게 할 방침

— 7월 초부터 12월 말까지는 제1기 사회봉사활동 학점 이수제를 신설

○ 학점이수제는 직원, 직원가족, 고객 등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연간 최대 2학점까지 받을 수 있어 내신, 입학,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대한건설협회,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활동 추진('06.5.25)

—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쇄신과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사업 이미지 개선' 로드 맵을 수립, 금년 3월부터 본격 추진

○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사업은 윤리경영 확산, 사회공헌 활동, 국민친화적 이미지 구축 등 3개 분야, 11대 핵심과제로 구성

◎ 전경련, 유럽 윤리경영 연수단 파견('06.5.25)

— 신세계와 우리은행 등 회원기업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유럽 윤리경영 연수단'을 5월28일부터 6월 4일까지 파견 예정